

# 稅務相談

相談 : 鄭 基 善  
 서울대병원 부설병원연구소 자문연구  
 위원 공인회계사

柳 泰 鉉  
 공인회계사·正宇會計法人

國民福祉向上과 더불어 增大되는 醫療需要 가운데 醫療保險의 擴大實施는 國民醫療需要를 점차 充足시키고 있다. 그러나 增大되는 醫療需要와 醫療質의 選好度에 비해 醫療機關의 發展은 現實情을 勘案한 醫療制度上的 各種問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이다.

本會는 이에 특히 病院諸稅面에 關心을 갖고 病院稅制欄을 마련하여 病院運營 發展의 一助가 되고자 한다.

[問] 外國의 慈善團體나 國內의 제약회사 등으로 부터 醫藥品이나 醫療器機등을 기증받은 경우 이를 반드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회계처리 안하였다가 문제가 되는 일은 없는지요? (경기도 K병원)

[答] (1) 外國에서는 病院에 대한 독지가의 기증이 많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

寄贈에 대하여는 받는 측인 病院과 주는 측인 外國의 團體나 國內企業, 個人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먼저 받는 측인 病院의 경우는 다시 會計處理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會計處理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매우 애매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法人稅法 施行規則 제 1조 제 2항은 “非營利法人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收益事業에 支出 또는 轉入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資本의 元入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時價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만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財團法人이나 醫療法人이 法人名義로 기증을 받아서 病院의 基本財産으로 出損을 하는 경우는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同法 제 15조 제 2항에서는 “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債務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移越缺損金の 보전에 充當된 금액은 內國法人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益金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증받은 것의 會計處理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 기증된 것을 時價로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會計處理하고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이를 보전하면 法人稅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아 래 —

●受贈時:

(차변)		(대변)	
의 약 품	×××	수증이익	××××
의료기기	×××		

●移越缺損金 보전시:

(차변)		(대변)	
수증이익	×××	이월결손금	×××

(3) 현재 宗教財團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病院들은 기증된 것을 아래와 같이 基本財産의 元入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차변)		(대변)	
의 약 품	×××	기 본 금	××××
의료기기	×××	(출연금)	

위와같이 會計處理하는 것은 法人의 非收益事業體에서 받아 收益事業體에 轉出시켜 주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할 것을 줄여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와같이 非收益事業體가 기증을 받아서 收益事業體에 보내는 것이 法的으로 허용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病院界에서 이를 당연한 처리로 보아 문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한 國稅廳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기증받은 것을 會計處理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營利法人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비영리법인이나 個人만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貿易去來法 시행령 제46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受贈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10萬원 이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會計處理하지 아니하였다가 적발되면 증여세(法人代表者대상)가 과세되게 됩니다. 현재 稅関에서는 일정금액이상(10萬원)인 無換輸入品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통지하여 주고 있으므로 적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의 法的立場은 法人이 수증적으로 會計處理하여 法人稅를 납부하면 무방하나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라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증익을 회계처리 하였어도 이월결손금이 그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贈與稅課稅時에는 수증자가 부담한 通関에 관계된 제반비용은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도 아니하며 공제하여 주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다음에 기증을 하는 측의 立場을 보면 外國의 慈善團體등이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法에 따라 회계처리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論外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企業이 의료법인등에 出捐 또는 寄附를 하는 것은 모두 寄附를 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대차대조표상에는 「投資와 其他資金」이 커다란 項目으로 구분되나 여기에서 말하는 投資資產으로 부터는 被投資事業體가 이익이 날 경우 投資者는 配當을 받으며 또한 清算時에는 殘餘財産의 分配權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醫療法人등에 출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國家에 寄贈하는 것이고 反對給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도 기부와 같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法人稅法 第18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指定寄附금을 받을 수 있는 對象에 財團法人이나 醫療法人등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同法令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보면 제 1 호에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시설비·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사업비”만을 규정하고 있고, 同令 제16호에는 “非營利法人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法人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등 두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말해서 病院에 營利企業이 出捐 또는 기부를 하려해도 法的으로는 기부금(즉, 損費)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醫療機關에의 기증을 法이 가로막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앞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는 病院이 구성한 「병원세제개선연구위원회」가 政府에 건의하여야 할 사항중 중요한 항목이 될 것입니다.



① 150

② 169